

대전지방법원 2023. 1. 18 선고 2022가단107507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한국자산관리공사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온새미로
담당변호사 김성진

피 고 A
변 론 종 결 2022. 12. 14.
판 결 선 고 2023. 1. 18.

주 문

1. 피고와 B 사이에 2017. 12. 19.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/11 지분에 관하여 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13,636,363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.
2. 피고는 원고에게 13,636,363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원고는 B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18014호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, 위 법원은 2013. 4. 19. “피고 B 등은 원고에게 C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42억 7,000만 원을 지급하라”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, 위 판결은 2013. 5. 11. 확정되었다.

나. 망 D(이하 ‘망인’이라 한다)이 2017. 12. 19. 사망하였고, 그 상속인으로는 배우자 E, 자녀 F, G, B, 피고(상속지분 2/11 지분)가 있다.

다. 망인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(이하 ‘이 사건 부동산’이라 한다)에 관하여 위 상속인 중 피고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(이하 ‘이 사건 약정’이라 한다)를 하였고, 피고는 2018. 3. 14.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

라. B는 이 사건 약정 당시 자신의 상속지분인 이 사건 부동산 중 2/11 지분(이하 ‘이 사건 지분’이라고 한다)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, 원고에 대하여 위 채무를 부담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.

마. 이 사건 부동산의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 시가는 97,000,000원이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, 2, 4, 6 내지 9호증(각 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,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, 이 법원의 H기관장에 대한 신용정보제출명령결과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판단

가.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

1) 피고는 원고가 부실자산 관리 및 채권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으로 그동안 B를 상대로 채권 추심관리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약정이 체결되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이

분명한데도 이 사건 약정이 체결된 때로부터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제척기간인 1년이 지난 2022. 3. 3.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,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.

2)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'취소원인을 안 날'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.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,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. 한편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(대법원 2009. 3. 26. 선고 2007다63102 판결 참조).

살피건대, 원고가 B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는 등 채권추심에 힘썼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약정의 체결 사실이나 및 그 소유의 재산으로 이 사건 지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추단하기 부족하고, 달리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,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.

나. 본안에 관한 판단

1) 피보전채권의 존재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원고는 이 사건 약정 당시 B에 대하여 확정판결에 기한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, 위 채권은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.

2)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B는 이 사건 약정을 하면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지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원고를 포함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으므로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약정 중 B의 상속분에 관한 부분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, 그 재산상태 등에 비추어 사해의사도 인정되며,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.

3)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

피고는 망인의 사망으로 홀로 되신 부친을 딸인 피고가 부양하는 것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받는 내용으로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한 것이므로, 피고는 선의의

수익자라고 주장한다.

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,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,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(대법원 2006. 4. 14. 선고 2006다5710 판결 참조).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선의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,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.

4)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

가)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,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,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,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,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, 그와 같은 가액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(대법원 2001. 12. 27. 선고 2001다33734 판결 등 참조).

나) 갑 제2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, 이 사건 약정 당시 설정되어 있던 I조합 명의의 근저당권(피담보채무액 2,200만 원)이 2019. 3. 27. 말소되었고, 2020. 8. 6. 채무자를 피고로 한 I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,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서의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식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.

이 사건 약정의 취소 및 가액배상 범위의 한도는 원고의 피보전채권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에서 위 피담보채무를 공제한 75,000,000원(=97,000,000원-22,000,000원) 중 이 사건 지분에 해당하는 13,636,363원(=75,000,000원× 2/11, 원미만 버림)이 된다.

다. 소결론

따라서 이 사건 약정은 13,636,363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,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13,636,36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3. 결 론

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.

판사 강길연

목록(부동산의 표시)

1동의 건물의 표시

대전광역시 대덕구

[도로명주소]

대전광역시 대덕구

철근콘크리트조 및 벽돌조 슬래브지붕 3층 다세대주택

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

1.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 144.9㎡

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

제1층 호 철근콘크리트조 및 벽돌조 66.06㎡

대지권의 표시

대지권종류: 1 소유권대지권

대지권비율: 144.9분의 37.256

